

전자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1조 ~ 제16조 <기재 생략> 제17조 (손실부담 및 면책) ① <기재 생략> ② 은행은 기업간에 물품의 배송, 운송, 하자,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<u>아무런</u>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<u><신설></u></p> <p>③ <기재 생략> 제18조 ~ 제22조 <기재 생략> 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 ~ 제16조 <현행과 동일> 제17조 (손실부담 및 면책) ① <현행과 동일> ② 은행은 기업간에 물품의 배송, 운송, 하자,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<u><삭제></u>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<u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.</u> ③ <현행과 동일> 제18조 ~ 제22조 <현행과 동일> 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</p>	<p>- 약관변경 권고 반영</p>